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정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지나치게 강조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도를 넘는 수업 방해
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왔습니다.

특히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서울특별시 교육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원’ 과 ‘교원에 대한 예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예방교육과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여 교원의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폐지 조례안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